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지 방 자 치 단 체 를 당 사 자 로 하 는
계 약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부의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지방계약 관련 위원회들을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통·폐합하는 내용으로 「지방계약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및 세부운영방안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안 제92조의5~92조의13삭제)

- 1) 종전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는 폐지되고 기능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통합·조정됨에 따라, 시행령상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전체 삭제 필요
- 2)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전체 삭제
- 3) 위원회 통·폐합에 따른 효율성 강화 기대

나. 위원회의 명칭, 기능 등 개정(안 제111조, 제116조의2개정, 제113조삭제)

- 1) 종전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와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가 통·폐합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 기능 등 개정 필요
- 2) 명칭을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변경하며 종전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재심청구 심사 및 조정) 및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기능(과징금 심의)을 통합 규정하고 그밖에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사유를 통합 규정
- 3) 위원회 통·폐합에 따른 효율성 강화 기대

다. 분과위원회 구성·운영방식 규정(안 제114조개정)

- 1) 과징금부과심의분과위원회와 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 구성 및 운영방안을 규정할 필요
- 2) 과징금부과심의분과위원회와 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 구성 및 운영방안을 규정할 필요
- 3) 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한 효율성 강화 기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5부터 92조의13까지를 삭제한다.

제111조제1항에서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이하 “재심청구”라 한다)하려는 자 또는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이하 “조정신청”이라 한다)하려는 자(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신청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증거자료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를 ”다음 각 호의 자는 각 호의 요청 등을 위해 필요한 서면 등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하고 다음 각호를 신설한다.

1.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여부나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를 요청(이하 “심의요청”이라 한다)하려는 시·도지사나 시·도지사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2.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이하 “재심청구”라 한다)하려는 자
3.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이하 “조정신청”이라 한다)하려는 자

제1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 청구 또는 신청된 사항을 심의·심사·조정해야 하며 이 경우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1조제3항에서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재심청구”를 “심의요청, 재심청구”로 하고 “절차”를 “서류 및 절차”로 한다.

제114조에서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 등”으로 하며 제1항에서 “위원회의”를 “법 제35조의2 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로 하고 “공사분야소위원회 및 물품·용역분야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둘 수 있다.“를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는 각호의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로 하며 다음 각호를 신설한다.

1. 과징금부과심의분과위원회 : 과징금의 부과여부와 부과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
2. 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위원회 : 재심청구에 대한 심사 및 조정신청에 대한 분쟁 조정

제114조에서 제2항, 제3항 및 제6항을 삭제한다.

제114조제4항에서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를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로 하며 ”10명 이내의 위원으로“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로 한다.

제114조제5항에서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조정청구된 사항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외의 사람을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를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로 한다.

제114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각 분과위원회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4조제8항에서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를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14조제9항에서 ”소위원회에“를 ”분과위원회에“로 한다.

제116조의2제1항제1호에서 ”사건의 당사자“를 ”부정당업자 또는 사건의 당사자“로 하며 ”당사자“를 ”부정당업자 또는 사건의 당사자“로 하고 제2호에서 ”사건의 당사자와“를 ”부정당업자 또는 사건의 당사자와“로

한다.

제116조의2제2항에서 "청구인등은"을 "부정당업자 또는 청구인등은"으로 한다.

제118조제1항에서 "제113조"를 "제111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회에서 심의요청,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92조의5(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1조의3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u>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이 되고, 위원은 성별을 고려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u> <u>1.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u> <u>2. 계약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8명 이내의 민간위원</u> <u>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경제학·행정학 또는 경영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근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u> <u>나.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u> <u>다. 지방조달계약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가목과 나목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u> <u>③ 제2항제2호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 <u>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u>	<u><전체 삭제></u>

<u>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u>제92조의6(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u> <u>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	<u><전체 삭제></u>
<u>제92조의7(위원의 제척·기피·회피)</u> <u>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u> <u>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부정당업자(부정당업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부정당업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u> <u>2. 위원이 해당 부정당업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건</u> <u>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사건</u> <u>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중앙행정기관(조달청의 경우 위원이 속한 국 또는 그에 상당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계약에 관련한 사건</u> <u>5. 위원이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조사 또는 심사를 한 사건</u> <u>② 해당 사건의 부정당업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u>	<u><전체 삭제></u>

<u>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u> ③ <u>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와 제2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u>	
<u>제92조의8(심의의 요청) ①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시·도지사</u> <u>와 시·도지사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여부나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1. <u>부정당업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u> 2. <u>과징금 부과가 필요한 사유</u> 3. <u>과징금 부과 액수와 판단 근거</u> ② <u>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u> 1. <u>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u> 2. <u>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증거서류</u> ③ <u>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만으로는 과징금 부과 여부와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92조의9제1항에 따른 심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u>	<u><전체 삭제></u>
<u>제92조의9(심의) ① 위원회는 시·도지사등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u>	<u><전체 삭제></u>

<u>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 ② <u>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부정당업자와 시·도지사등에게 심의 요청된 사항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진단과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u> ③ <u>위원회는 심의·결정의 완료 전에 부정당업자와 시·도지사등 및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및 시·도지사등과 그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u>	
<u>제92조의10(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u> ② <u>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③ <u>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u> ④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u>	<u><전체 삭제></u>
<u>제92조의11(과징금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공사분야소위원회 및 물품·용역분야소위원회(이하 “과징금소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둘 수 있다.</u> ② <u>공사분야소위원회는 건설·전기통신 등 공사와 관련된 과징금 부과 심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u> ③ <u>물품·용역분야소위원회는 물품의 제조·구매와 용역과 관련된 과징금 부과 심의에 관한 사항을 담당</u>	<u><전체 삭제></u>

한다. ④ 과징금소위원회는 과징금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과징금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되, 심의 요청된 사항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사람을 과징금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안은 해당 과징금소위원회에서 미리 심의하여 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소위원회는 작성된 결정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⑦ 과징금소위원회의 심의, 회의 및 과징금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의 수당에 관하여는 제92조의9, 제92조의10 및 제92조의1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과징금소위원회”로, “위원회의 위원장”은 “과징금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92조의12(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체 삭제>
제92조의13(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92조의5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	<전체 삭제>

<u>(解囑)할 수 있다.</u> <u>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 <u>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u> <u>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u>4. 제92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u> <u>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u>	
제111조(재심청구 등) ① <u>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이하 “재심청구”라 한다)하려는 자 또는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이하 “조정신청”이라 한다)하려는 자(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신청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증거자료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u> <신 설> ② <u>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과 관련하여 필요</u>	제111조(<u>심의요청 등</u>) ① <u>다음 각 호의 자는 각 호의 요청 등을 위해 필요한 서면 등을</u>----- ----- <u>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u> <u>회</u>----- ----- <u>1.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여부나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를 요청(이하 “심의요청”이라 한다)하려는 시·도지사 및 시·도지사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u> <u>2.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이하 “재심청구”라 한다)하려는 자</u> <u>3.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이하 “조정신청”이라 한다)하려는 자</u> ③ <u>제1항 및 제2항</u>----- - <u>심의요청, 재심청구</u>-----

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1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청구 또는 신청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고, 청구 또는 신청된 사항을 심사·조정해야 한다.	-----<u>서류 및 절차</u>-----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 청구 또는 신청된 사항을 심의·심사·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삭 제>
제11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u>공사분야소위원회 및 물품·용역분야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u>를 각각 둘 수 있다. <신 설> ② <u>공사분야소위원회는 건설·전기·정보통신 등 공사와 관련한 지방계약분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u> ③ <u>물품·용역분야소위원회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과 관련한 지방계약분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u> ④ <u>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신 설>	제114조(분과위원회 등) ① <u>법 제35조의 2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u>----- -----<u>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는 각 호의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u> 1. <u>과징금부과심의분과위원회 : 과징금의 부과여부와 부과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u> 2. <u>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위원회 : 재심청구에 대한 심사 및 조정신청에 대한 분쟁 조정</u> ② <삭 제> ③ <삭 제> ④ <u>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u>-----15 <u>명 이내의 위원으로</u> -----

⑤ <u>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조정청구된 사항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외의 사람을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u> ⑥ <u>위원회에 조정청구된 분쟁은 해당 소위원회에서 미리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위원회는 작성된 조정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u> <신 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u>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 ⑦ 제117조, 제118조제2항·제3항 및 제121조의 규정은 <u>소위원회에</u> 준용한다	⑤ <u>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u> ⑥ <삭 제> ⑦ <u>분과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분과위원회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u> ⑧ ----- --<u>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u> --- ⑨ ----- -----<u>분과위원회에</u> -----
제11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생략)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u>사건의 당사자</u>(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u>당사자</u>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2. 위원이 해당 <u>사건의 당사자와</u>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건 3.~5. (생략) ② 해당 사건의 <u>청구인등</u>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제11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현행과 같음) 1. ----- -----<u>부정당업자 또는 사건의 당사자</u>----- ----- -----<u>부정당업자 또는 사건의 당사자</u>----- ----- 2.-----<u>부정당업자 또는 사건의 당사자와</u>----- 3.~5. (현행과 같음) ② -----<u>부정당업자 또는 청구인등</u>----- ----- ----- -----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생략)	----- ----- ③ (현행과 같음)
제11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제출) ① 제113조에 따라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의 내용을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생략)	제11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제출) ① 제111조----- ----- ----- ----- ----- ②,③(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783